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관 광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88호, 2024. 10. 22. 공포, 2025. 4. 23. 시행)됨에 따라,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·고시,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,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,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의 경미한 면적 변경, 지정·고시 등 절차,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(안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)
- 나. 소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신청,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, 사유지의 매수 요청,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의 절차, 준공검사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(안 제46조, 제47조, 제47조의2, 제47조의3 및 제50조의2 개정)
- 다.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2조제5항 후단”을 “법 제52조제5항 후단(법 제5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2조제6항”을 “법 제52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8항”으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”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를 지정·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5조의2제2항 중 “법 제54조제1항 단서”를 “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“(조성계획의 승인신청)”을 “(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)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54조제1항”을 “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54조제1항 단서”를 “법 제5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”으로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(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4조제1항 후단”을 “법 제5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“법 제54조제1항”을 “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“법 제54조제6항”을 “법 제54조제7항”으로, “같은 조 제1항 단서”를 “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4조제6항”을 “법 제54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

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제35조제4항”을 “제35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각각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현행	개정안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관광 지등의 지번·지목·지적 및 소 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 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	지정된 관광단지를 지정·고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
제45조의2(행위 등의 제한) ① (생 략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를 하려는 경우 <u>법 제54조제1항</u> <u>단서</u>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(생략)	③ ----- ----- ---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(<u>법 제5</u> <u>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</u> <u>정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포</u> <u>함한다</u>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45조의2(행위 등의 제한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법 제54조제1항</u> <u>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현	행	개	정	안
수·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· 군수·구청장(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제외한다)-----		

<u><신 설></u>		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(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	
제47조(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)		제47조(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)		
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	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		

1. ~ 5. (생략)	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		6. 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		

현행	개정안
특별자치도지사(가)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사업시행사”라 한다)(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)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. 다만, 양도·양수, 분할,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2(사유지 매수 요청)	제47조의2(사유지 매수 요청)
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사(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① 법 제54조제7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같은 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
(생략)	(현행과 같음)
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이고	③ ----- 법 제54조제7항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. 제47조의3(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)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¹⁾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(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제50조의2(준공검사)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	-----. 제47조의3(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) -----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----- <u>-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-</u>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제50조의2(준공검사) ① -----

현행	개정안
은 준공검사신청서를 <u>시·도지사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----- 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<u>제35조제4항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(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4. ----- <u>제35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5. ~ 6. (생략)	5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<u>시·도지사</u> 는 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	③ --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,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<u>시·도지사</u> 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법 제54조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<u>시·도지사</u>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-----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</u> 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92